

Focus on your Tomorrow!  
고객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BIZENTRO

# Introducing to **UNIFTA**

*Robotic Process Automation*

2022



UNIERP



UN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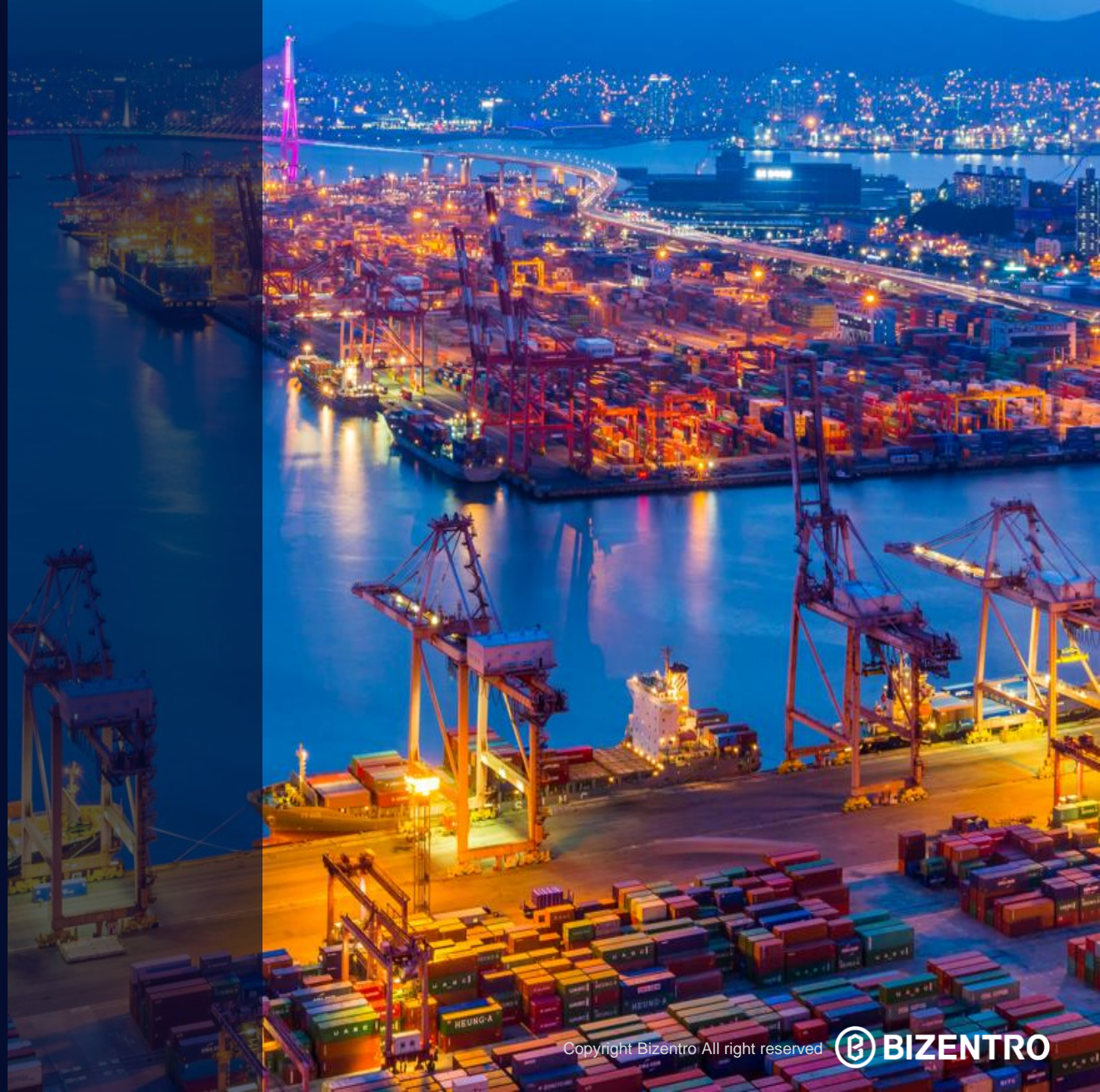
UNIportal



UNIBI



UNIHR



Copyright Bizentro All right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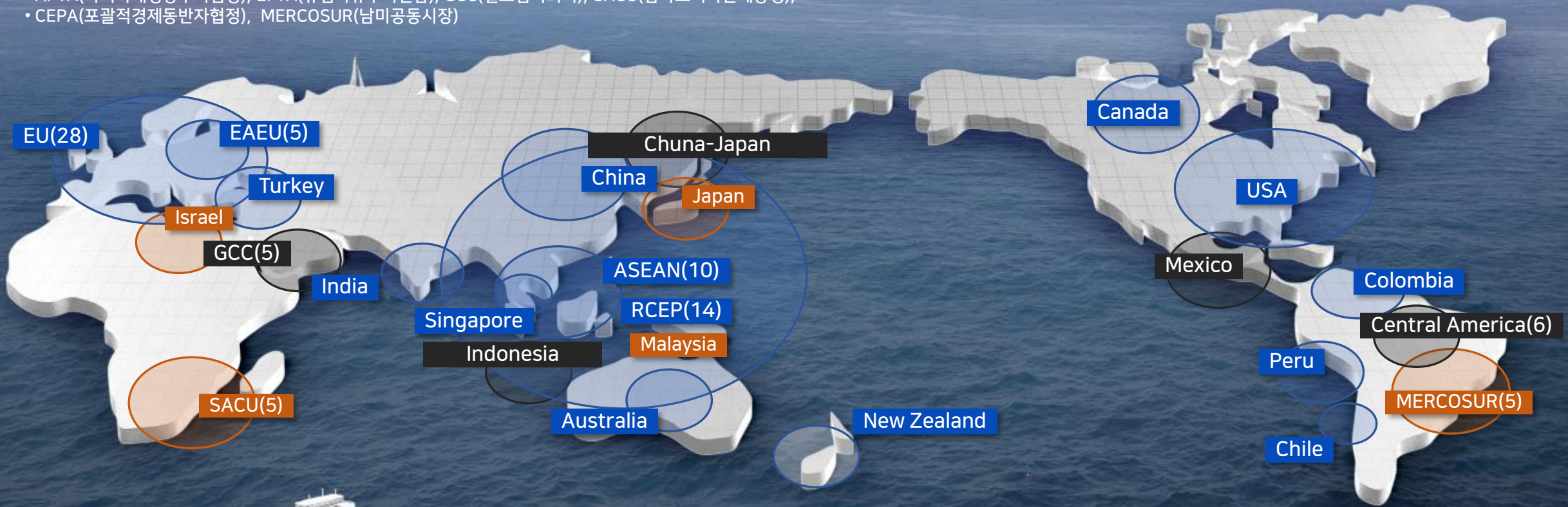


# CONTENTS

---

- I. UNIFTA Overview
- II. UNIFTA 솔루션 소개
- III. UNIFTA 구축사례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GCC(걸프협력회의),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MERCOSUR(남미공동시장)



발효 (58)	기 발효 국가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영국, RCEP(14), 중미(6),
협상완료/진행 (7)	협상 진행중인 국가 : 한중일,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스라엘
준비 (15)	여건 조상중인 국가 : PA(4), 일본, MERCOSUR(5), 이스라엘, EAEU(5)



### FTA의 양면성

FTA가 현재 알려지기는 기업에게 관세절감이라는 유리한 측면만 보도되어 일반적으로 이러한 측면만 인식되었지만, 원산지판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당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함



### 추징사례

대표적인 추징사례로는 NAFTA 협정에 의한 Ford사와 Pioneer사가 원산지판정을 잘못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각각 \$41 million, \$37 million을 추징 당하였음



### 원산지판정의 책임자

원칙적으로 세관은 수입자에게 추징을 하지만,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청구권 계약이 존재하면 원천적인 잘못은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청구권을 행사 가능. 따라서 수입시 구매계약서에 청구권 문구 필요



### 부품공급사의 원산지확인서의 중요성

최종생산자 입장에서 부품공급사의 원산지확인서의 결과에 따라, 최종생산자의 원산지 판정이 변경될 수 있음.  
이는 부품의 원산지가 결국 완성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확한 최종생산자의 원산지 소명을 위하여는 부품공급사의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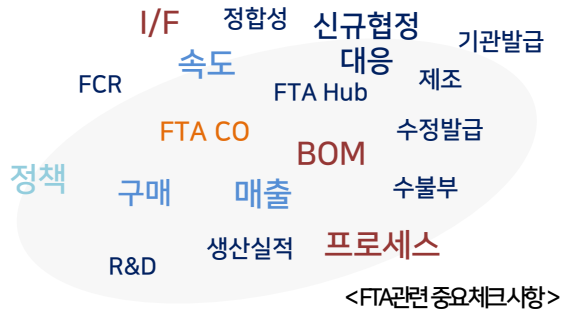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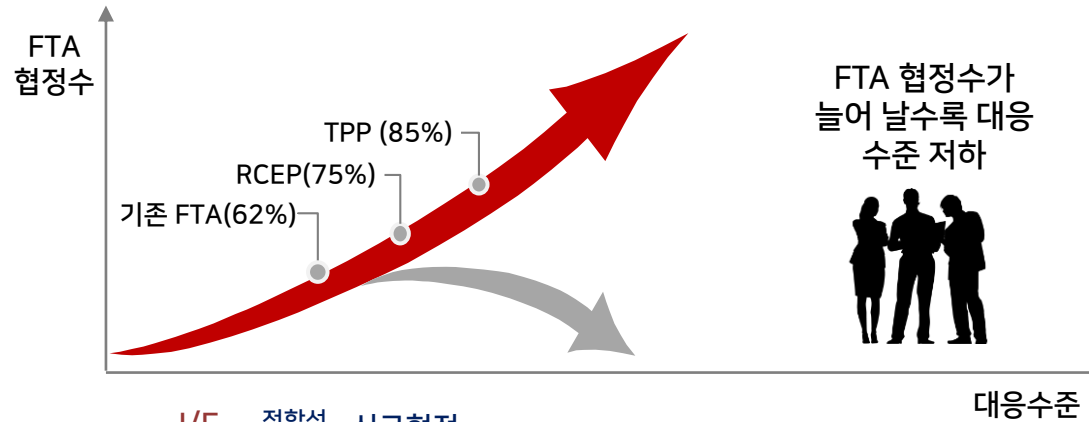
### 현장실사가가능성

대표적인 추징사례로는 NAFTA 협정에 의한 Ford사와 Pioneer사가 원산지판정을 잘못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각각 \$41 million, \$37 million을 추징 당하였음

UNIFTA 다양한 ERP와 자동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FTA 대응 및 실사 수감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FTA 업무에 최적화된 솔루션 입니다.

## FTA 원산지 관리의 필요성

효과적인 FTA 대응(실사포함)을 위해 **FTA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재구축 필요성 증대**



격변하는 FTA 환경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부재

통합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부재



###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

- 구매원재료의 운반비 및 관세, 부대비용의 거래건별 추적 필요
- 표준 BOM과 실제 생산투입실적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원산지 판정 근거 데이터와 감사 보고서의 데이터 확인 등 재무 정합성 검증 필요
- 주요 거래처 및 수출제품에 대한 실사 대비

### 타 시스템/기관 간 다양한 연계

- FTA Hub 및 기관발급 연계 ▶ HKMC, uTrade, 관세청
- 다양한 방식의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웹서비스방식, 엑셀업로드, 직접 입력, EDI 등)

###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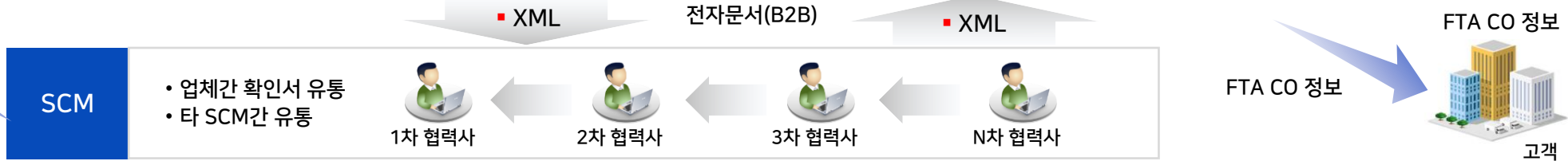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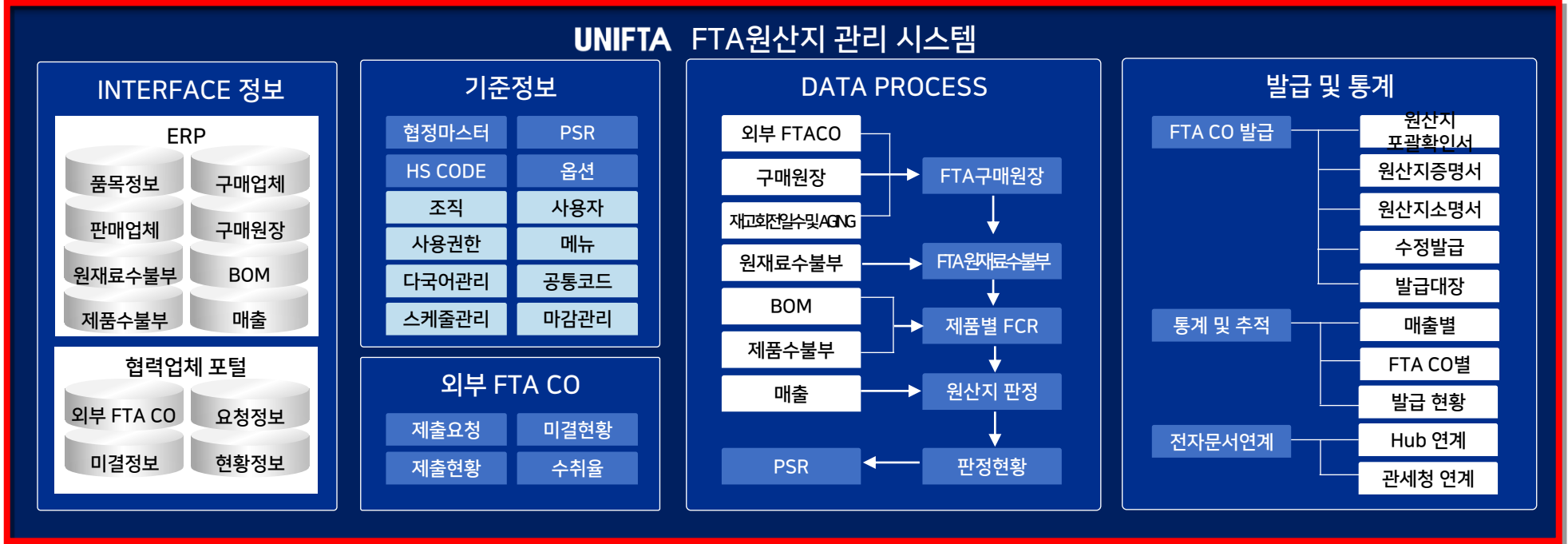
- 신규협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1~2주일내 신규협정 대응 가능
- 실사 RISK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체계 구축
- 고객사 및 세관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실사 수감 가능

**효율적인 FTA 대응 및 실사 수감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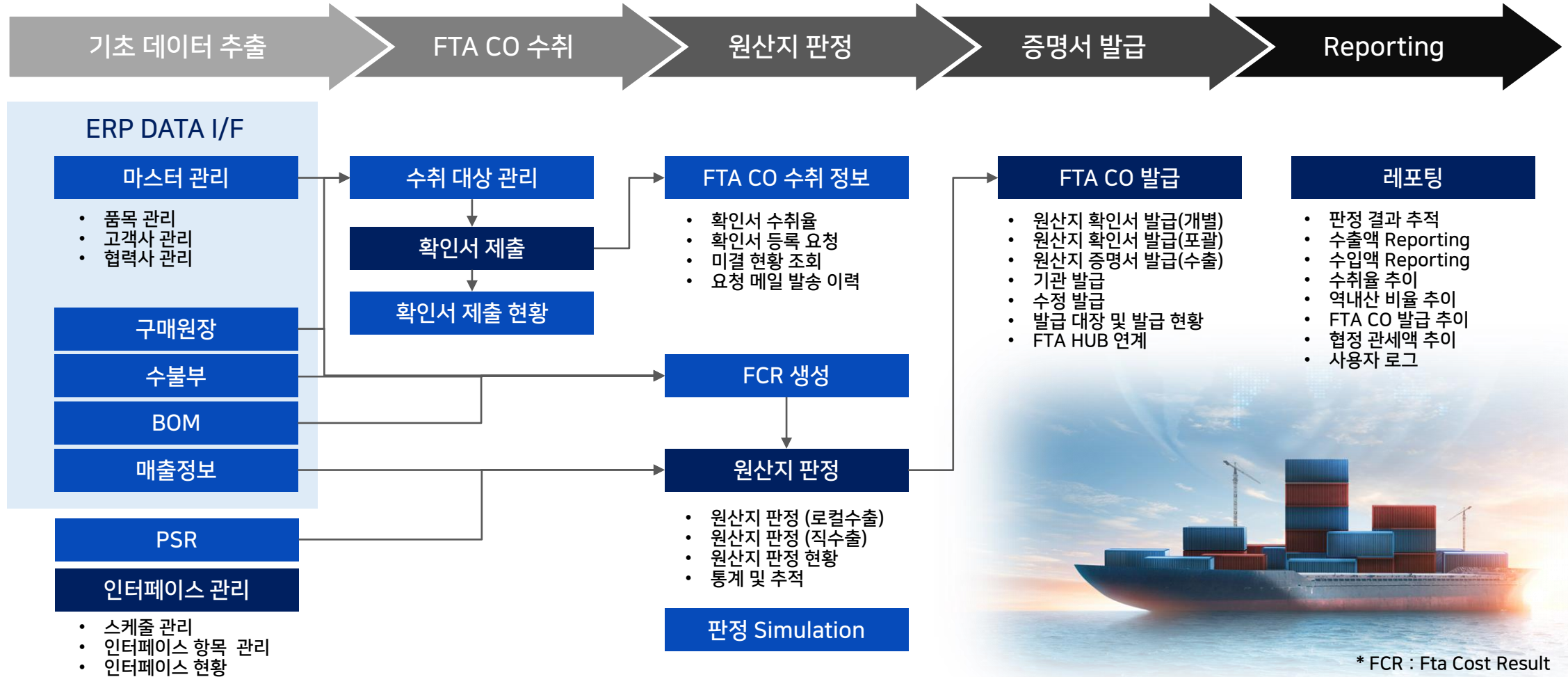
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요건 충족 및 사후 검증의 신뢰성 제고 확보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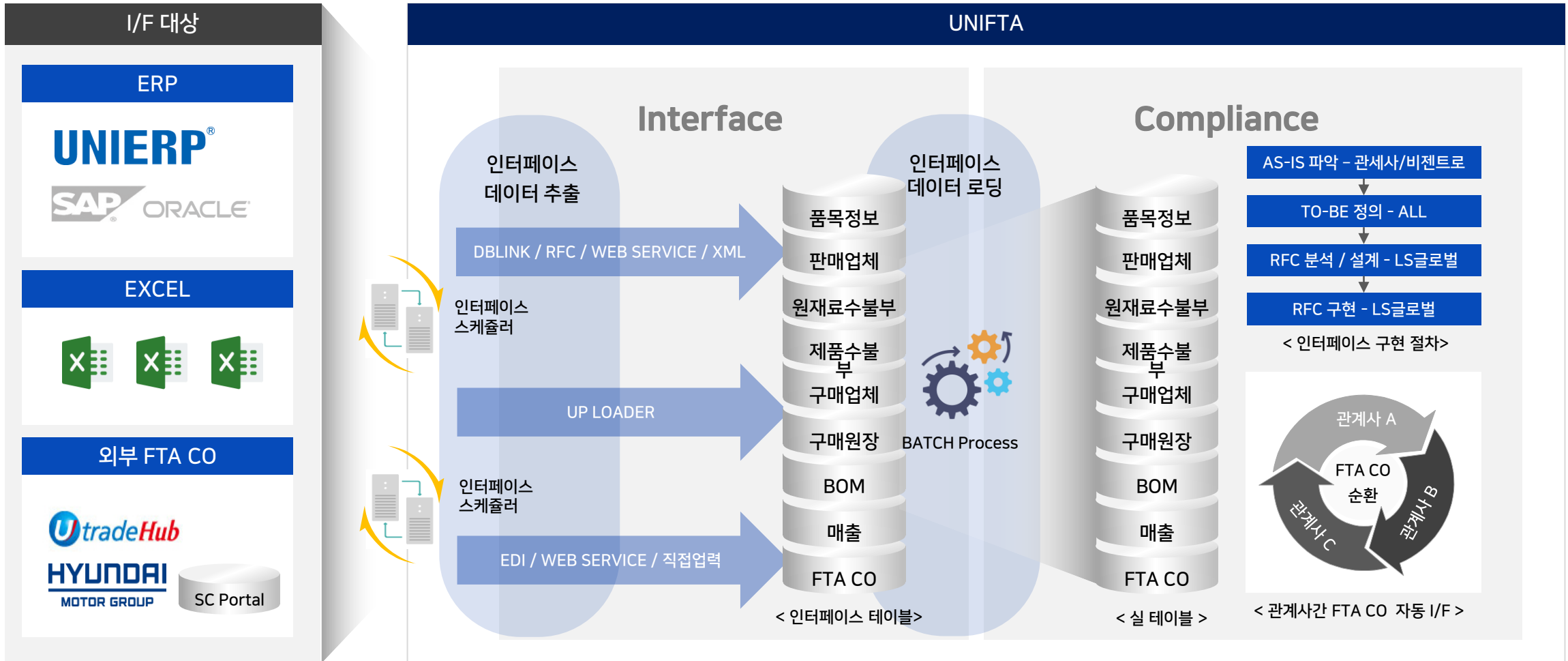
- FCR (FTA Cost Result) : FTA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준 가격정보 (-재료비 조정가치가 반영된 원재료 , - 판매비 조정가치가 반영된 제품)
- PSR :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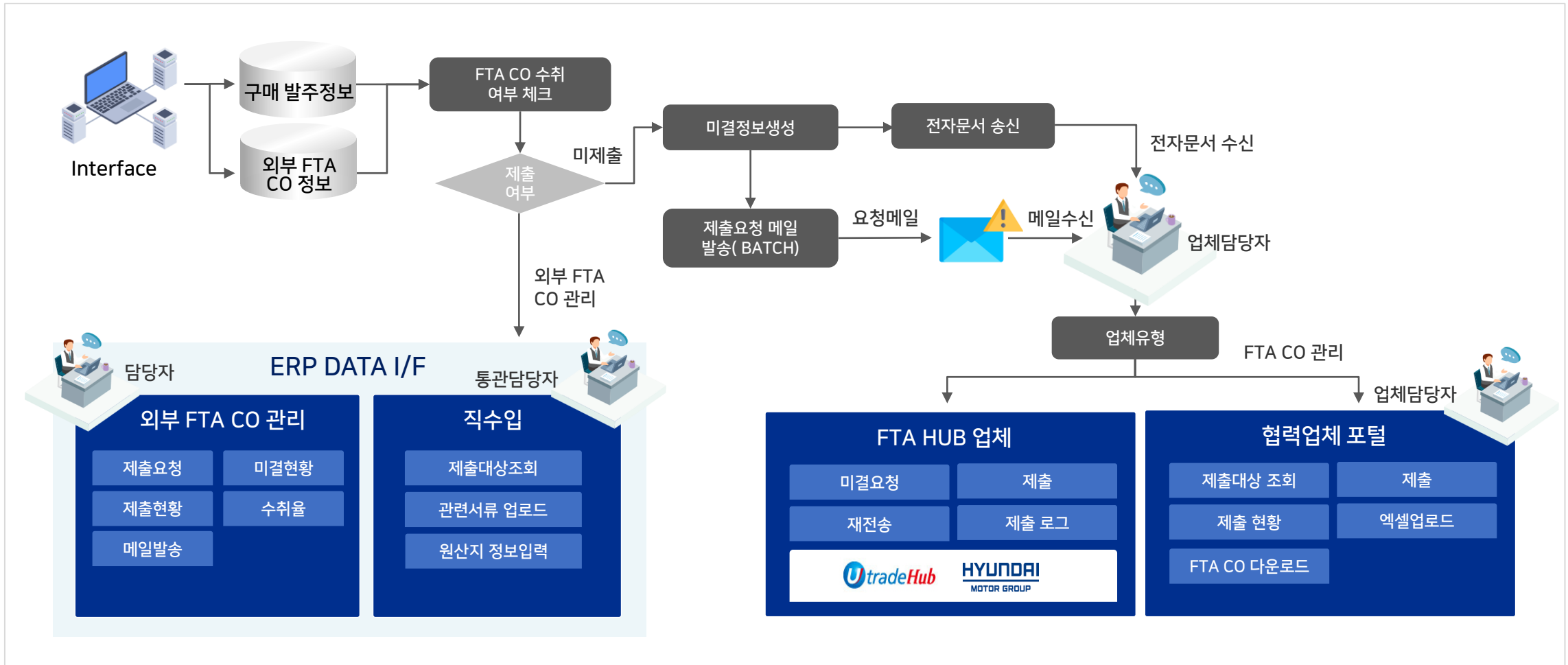
UNIFTA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원산지 결정을 통한 FTA CO 발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후 실사를 대비한 대응 프로세스 및 증빙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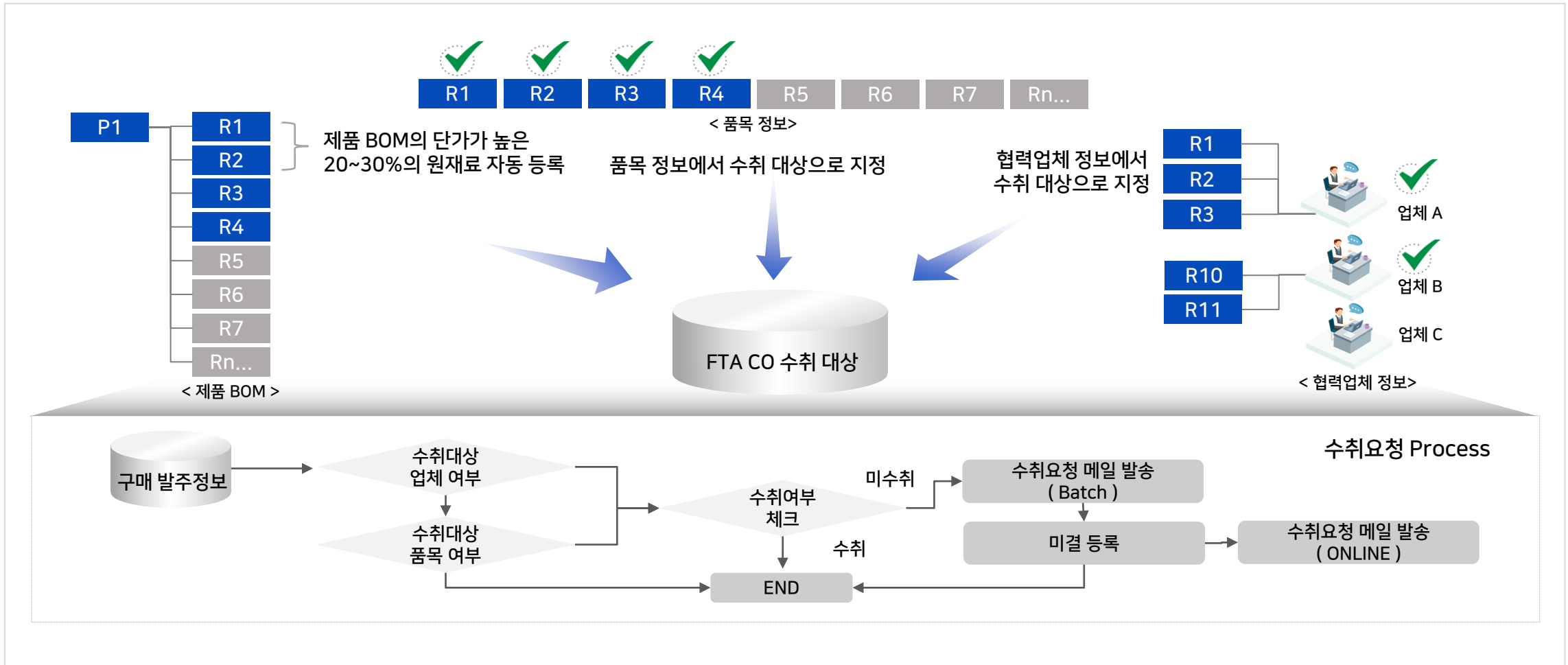
FTA 원산지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 I/F는 다양한 방식 (RFC, 웹 서비스, 엑셀 업로드, 전자문서)으로 제공되므로 고객사의 IT 및 업무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효율적인 I/F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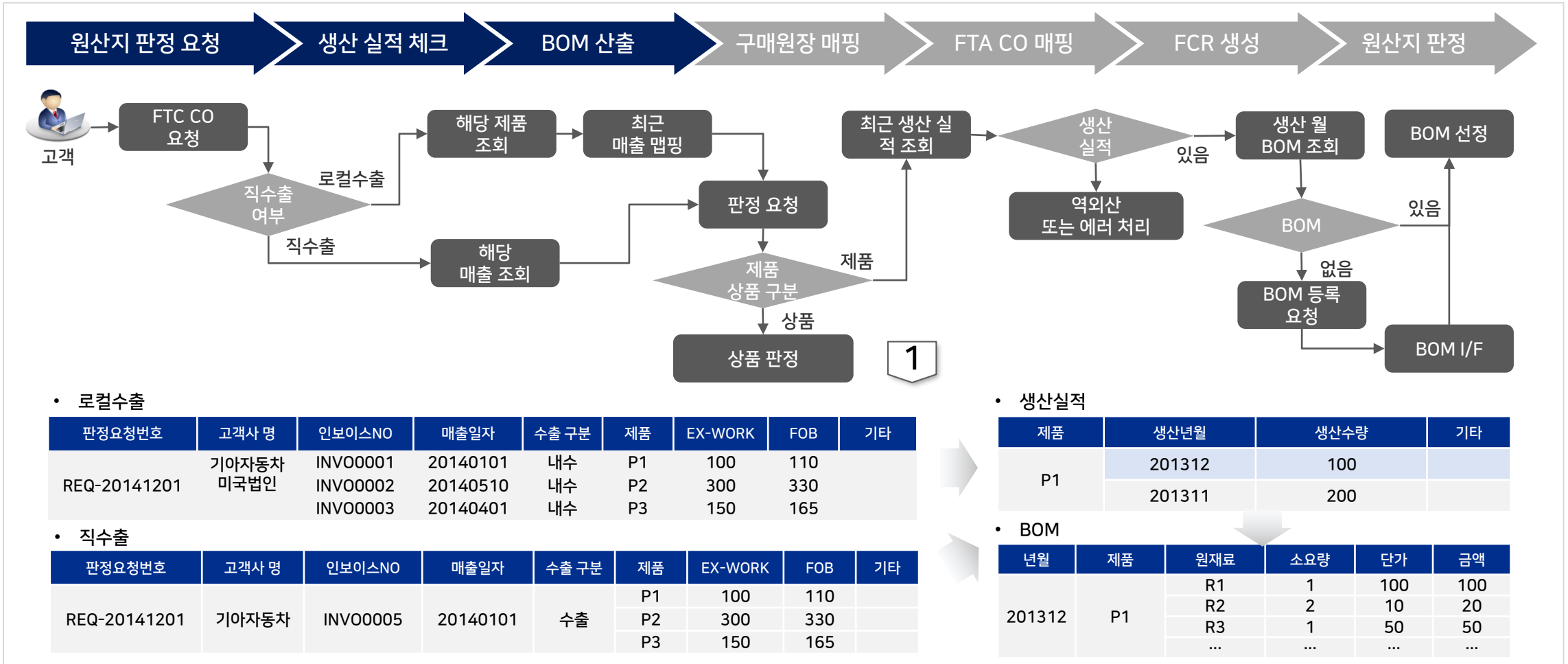
로컬 수입에 대한 FTA C/O 수취는 Supplier Portal 및 FTA HUB에 기능을 구현하여 협력업체에게 제공하며, 직수입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기능 제공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FTA CO를 관리 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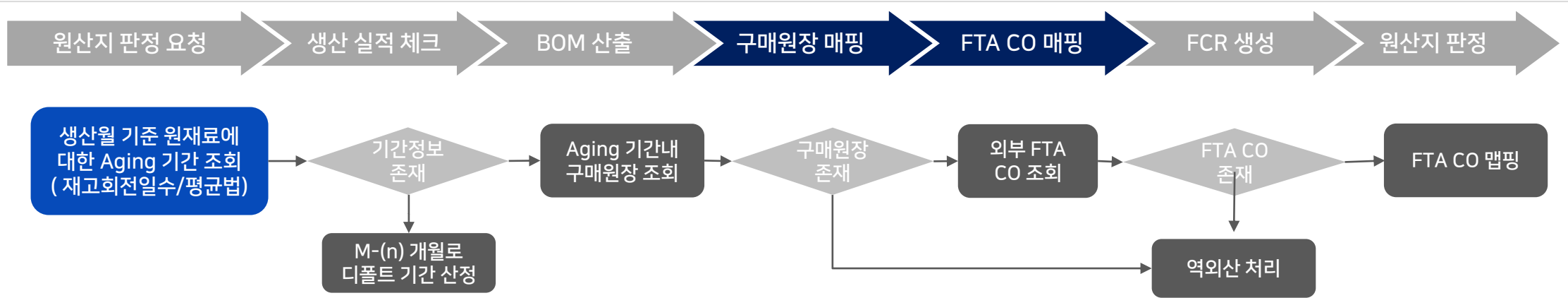
FTA C/O 수취 대상은 BOM을 통한 자동 대상 선정 기능 과 마스터 정보( 품목, 협력업체)를 이용하여 회사 담당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수동 대상 선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TA 원산지 결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제조 활동 데이터( R&D, 구매, 제조, 매출 등)가 필요로 하며, 외부 FTA CO 및 PSR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판정 됩니다.



생산월의 BOM을 기준으로 재고 AGING 기간을 산출하고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구매원장과 외부 FTA CO를 맵핑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 BOM

년월	제품	원재료	소요량	단가	금액
201312	P1	R1	1	100	100
		R2	2	10	20
		R3	1	50	50
		...	...	...	...

•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구매 적용 기간 산정

년월	원재료	수량	M	M-1	M-2	...	M-12	기간산정
201312	R1	200	100	50	50	0	0	90 일
	R2	30		30	0	0	0	60 일
	R3	20	0	0	0	0	0	N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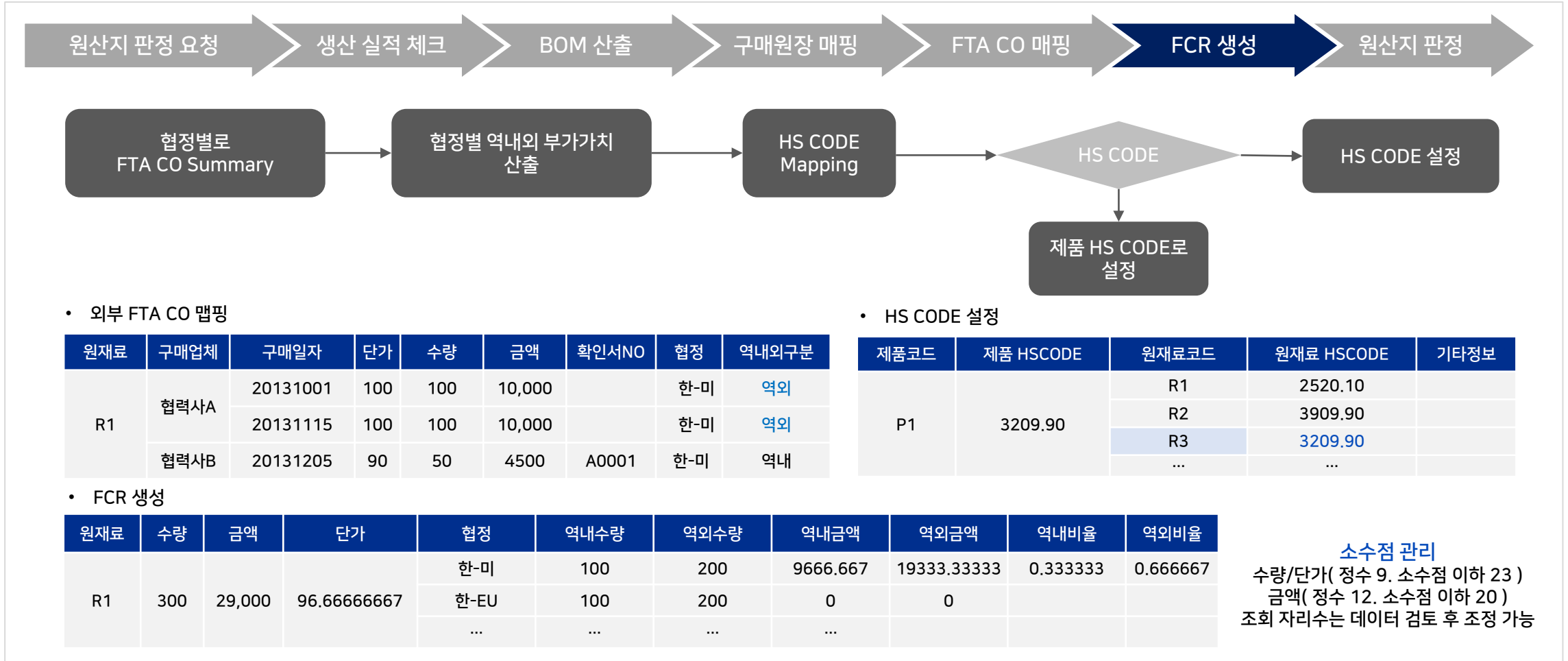
• 구매원장

원재료	구매업체	구매일자	단가	수량	금액
R1	협력사A	20131001	100	100	10,000
		20131115	100	100	10,000
	협력사B	20131205	90	100	9,000

• 외부 FTA CO 맵핑

원재료	구매업체	구매일자	단가	수량	금액	확인서NO	협정	역내외구분
R1	협력사A	20131001	100	100	10,000		한-미	역외
		20131115	100	100	10,000		한-미	역외
	협력사B	20131205	90	50	4,500	A0001	한-미	역내

BOM을 기준으로 구매원장 및 외부 FTA CO를 맵핑한 정보를 이용하여 FCR을 생성합니다. FCR은 기중 판정 시 최초 1번 생성이 되며 이후 판정에서는 이전 FCR을 활용함으로써 판정 속도를 높입니다. ( 단, 기중에만 적용 됨 )



• 외부 FTA CO 맵핑

원재료	구매업체	구매일자	단가	수량	금액	확인서NO	협정	역내외구분
R1	협력사A	20131001	100	100	10,000		한-미	역외
		20131115	100	100	10,000		한-미	역외
	협력사B	20131205	90	50	4500	A0001	한-미	역내

• HS CODE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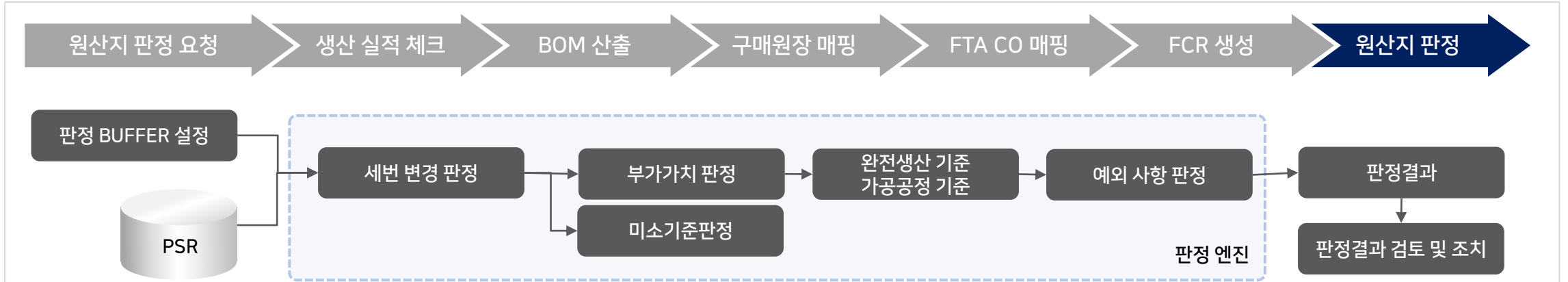
제품코드	제품 HSCODE	원재료코드	원재료 HSCODE	기타정보
P1	3209.90	R1	2520.10	
		R2	3909.90	
		R3	3209.90	
		...	...	

• FCR 생성

원재료	수량	금액	단가	협정	역내수량	역외수량	역내금액	역외금액	역내비율	역외비율
R1	300	29,000	96.66666667	한-미	100	200	9666.667	19333.33333	0.3333333	0.666667
				한-EU	100	200	0	0		
				...	...	...	...	...		

**소수점 관리**  
 수량/단가( 정수 9. 소수점 이하 23 )  
 금액( 정수 12. 소수점 이하 20 )  
 조회 자리수는 데이터 검토 후 조정 가능

매출 및 FCR 정보를 이용하여 FTA 원산지 판정을 수행합니다. FTA 원산지 판정은 실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별 BUFFER를 설정하여 보수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판정결과 All

제품코드	FTA명	HS코드	금액	EXWORK 금액	FOB 금액	순원가	재료비 금액			판정기준	충족여부		
							합계	역내산	역외산		협정 기준	회사 기준	
1	2325152	한-페루	830120	1,146	1,146	1,146	2,419	943	0	943	BD50	NO	NO

원산지 판정현황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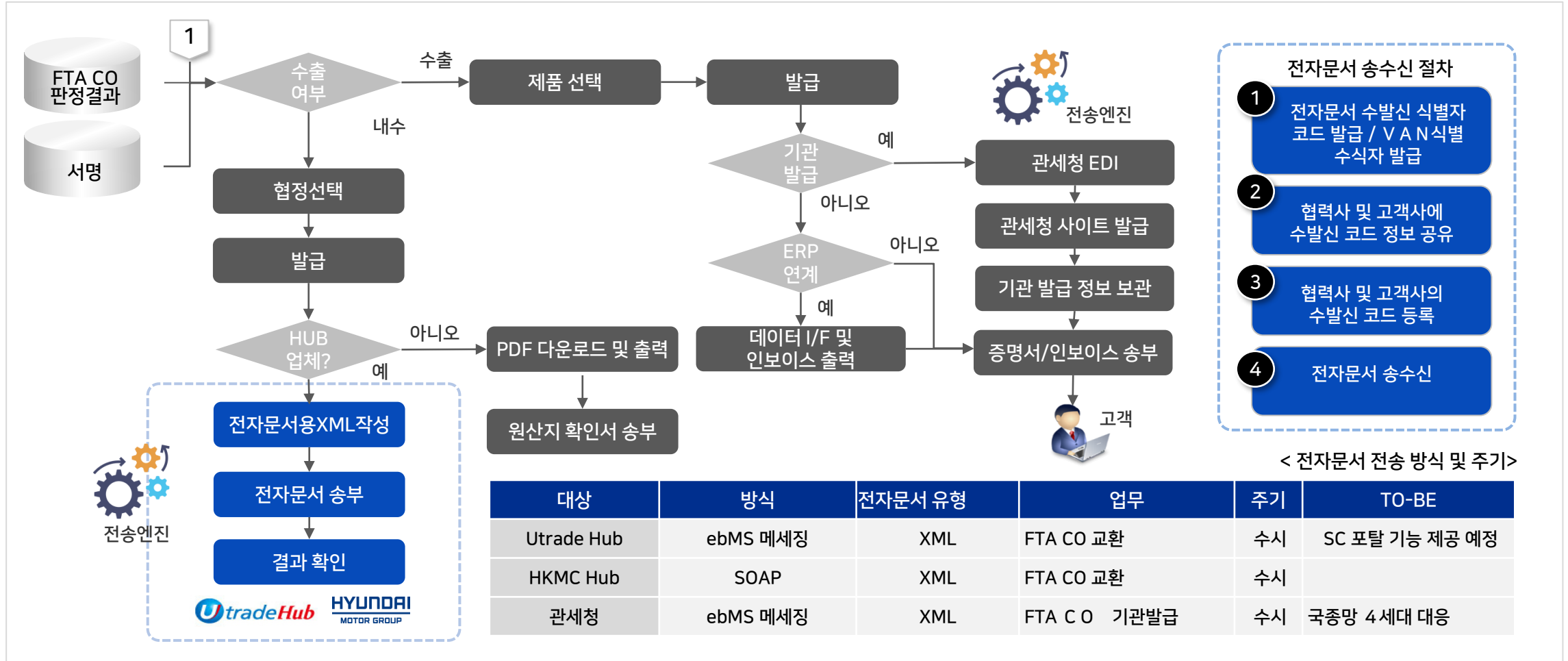
순번	물판정코드	부가가치 기준 판정결과				CTC충족여부	미소기준 결과				충족여부		판정
		결과비율	협정비율	회사비율	회사 기준		결과비율	협정비율	회사비율	회사 기준	협정 기준	회사 기준	
1	1	CTH				N	5.76%	10.00%	5.00%	N	Y	N	다른 호에 해당하
2	2	BD40	17.67%	40.00%	46.00%	N					N	N	40% 이상의 역내
3	3	BU40	0.00%	40.00%	46.00%	N					N	N	40% 이상의 역내

제품코드	FTA명	HS코드	금액	EXWORK 금액	FOB 금액	재료비 금액			판정기준	충족여부		
						합계	역내산	역외산		협정 기준	회사 기준	
1	28500-2A750	한-미세안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H	NO	NO
2	28500-2A750	한-콜레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SH+BD45	NO	NO
3	28500-2A750	한-EFTA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MC40	NO	NO
4	28500-2A750	한-EU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H	NO	NO
5	28500-2A750	한-인도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SH+BD40	NO	NO
6	28500-2A750	한-콜루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SH	YES	YES
7	28500-2A750	한-싱가포르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H	NO	NO
8	28500-2A750	한-터키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H	NO	NO
9	28500-2A750	한-미	841480	145,806	145,019	145,806	113,947	0	113,947	CTH	NO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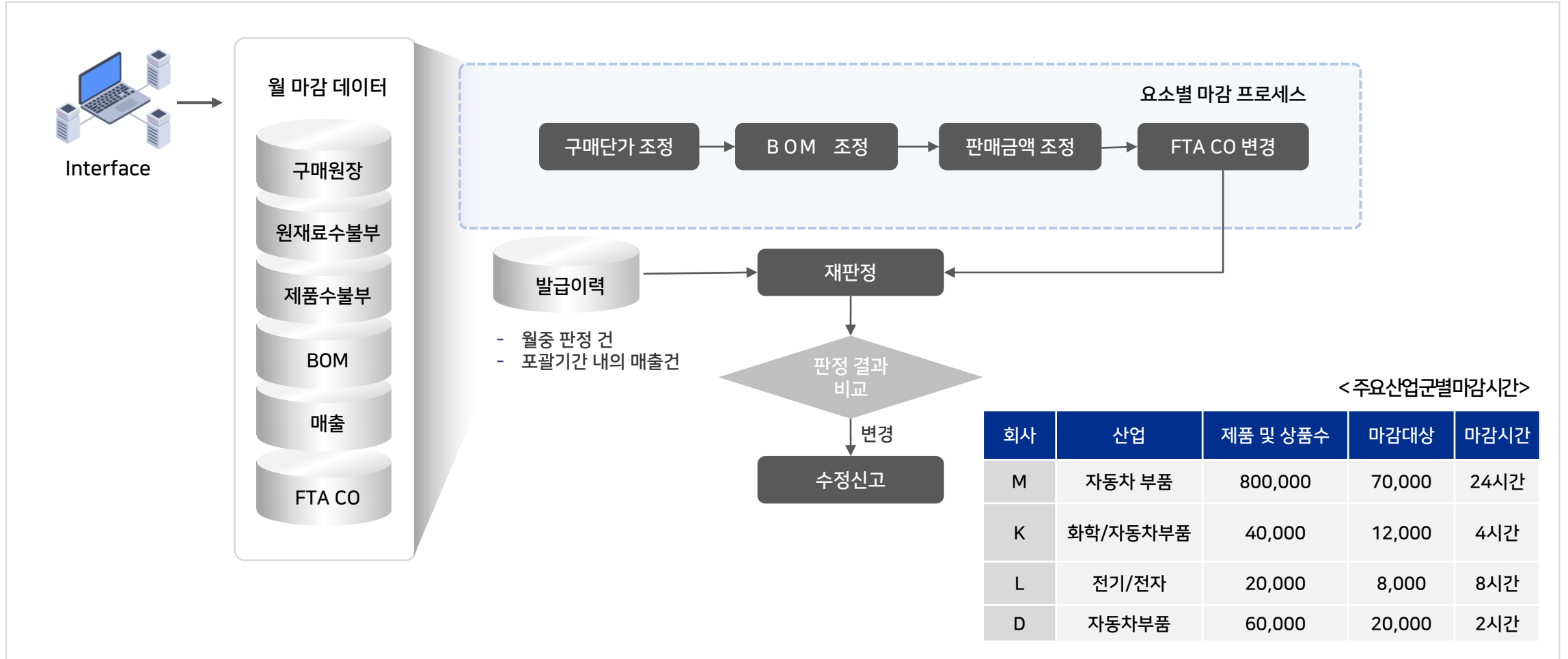
원산지 판정현황 상세

순번	물판정코드	부가가치 기준 판정결과				CTC충족여부	미소기준 결과				충족여부		판정
		결과비율	협정비율	회사비율	회사 기준		결과비율	협정비율	회사비율	회사 기준	협정 기준	회사 기준	
1	1	CTH				N	48.31%	10.00%	9.00%	N	N	N	다른 호에 해당하
2	2	BD40	21.85%	40.00%	45.28%	N					N	N	40% 이상의 역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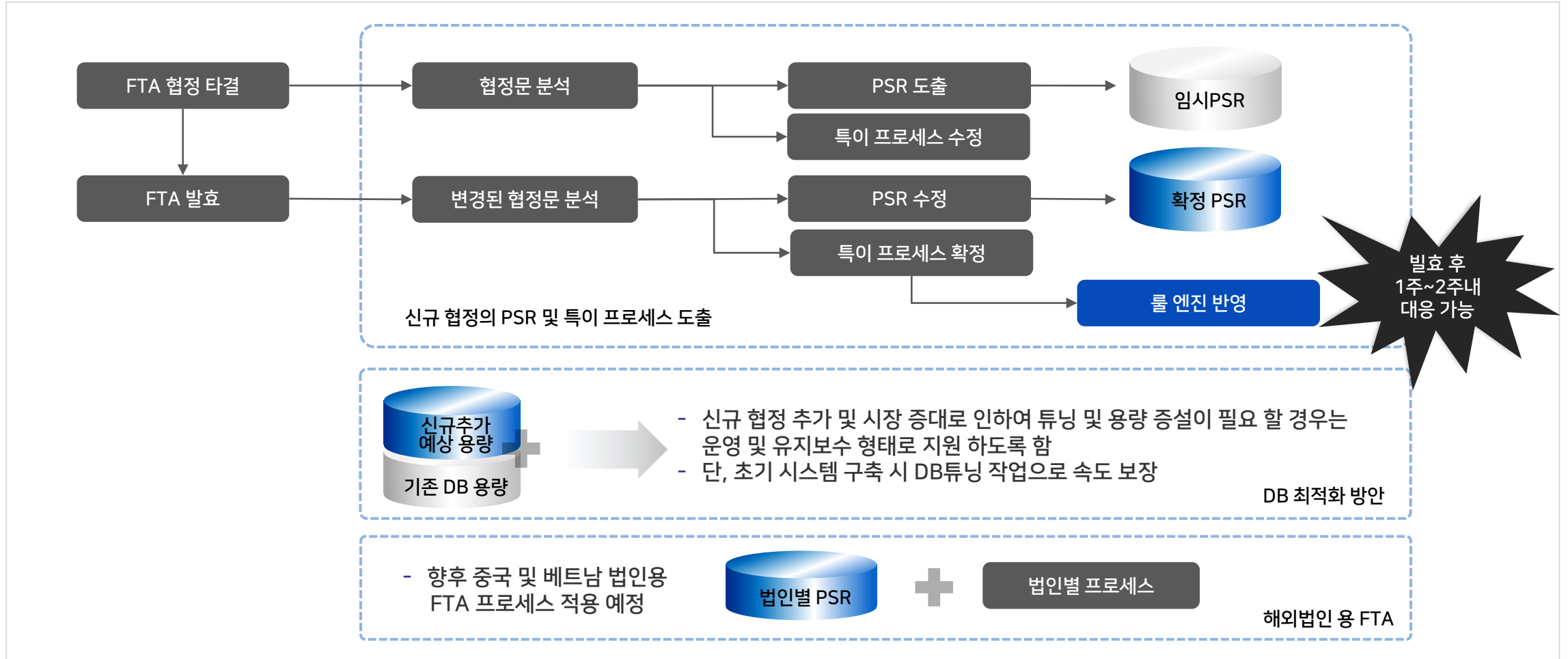
다양한 FTA CO발급 방법 ( PDF, 전자문서, 엑셀 등 ) 과 전송 방법 ( HUB, 관세청 )을 지원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정산작업은 월 단위로 마감요소(구매금액 변동, 판매단가 변동, 원산지 비율 변경 등)를 반영하는 기능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다시 실시합니다. 정산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여 수정 신고 대상이 발생하면 수정 신고를 합니다.



신규 협정이 체결이 되면 전문가 집단에 의해 사전 검토되고 확정된 프로세스와 PSR을 배포 및 적용함으로써 최단 시간내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젠티로(주)는 글로벌 수출입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FTA 원산지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젠티로 단독 구축 사례					
삼정 KPMG와 공동 구축 사례					
비젠티로 보유 인력의 FTA 패키지 및 서비스 구축 사례				K-ORIGIN	



Digital Transformation Solution **No.1**

고객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BIZENTRO

# THANK YOU



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상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혁신분야 수상



스마트팩토리 어워드 코리아  
비젠토(주) MES 부문 산업선도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스마트팩토리 우수사례 UNIMES 구축 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670) 유스페이스 1-A 10층 marketing@bizentro.com 1588-4788 / 080-500-2020